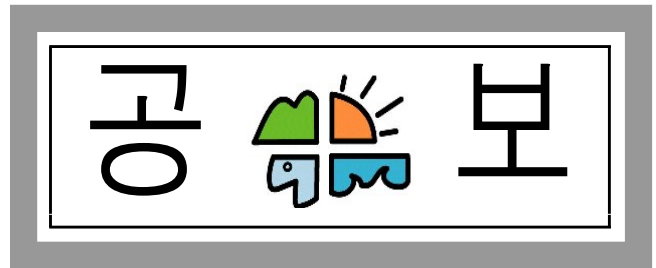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79호 2020년 7월 31일(금)

조 례

-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훈 령

-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4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교정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6

공 고

-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의견청취 공고 7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3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1472호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골시설(유택동산) 사용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0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즉 시
사망자 (유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개장) 장소		사망(개장) 연월일	년 월 일	
	사망(개장) 연월일		사망(개장) 사유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택동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제 호					
유택동산 사용 허가증					
사망자 (유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허가하였기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7월 31일

속초시장 (직인)

속초시 훈령 제740호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5인 이내”를 “11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률전문가”를 “법률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종결처리 된 반복민원 중 재접수된 민원
8.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가 수반된 반복민원

③ 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우선심의 대상으로 한다.

1. 종결처리된 반복민원 중 재접수된 민원
2.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가 수반된 반복민원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해당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교정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교정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속 초 시 장

-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㉑	공공청사	교정 시설	장사동 산50번지 일원	116,182	증)703	116,885	‘12.03.16. (강고 제2012-78호)	20%	100%	4층 이하	

■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㉑	공공청사	○ 공공청사 구역 변경 - 면적 : 116,182㎡→ 116,885㎡ (증 703㎡)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사항) ※ 측량조사 결과에 따른 면적증가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의견청취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학지구 급경사지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청취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30일

속 초 시 장

1. 목 적 :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대상지 인접부지에 위치한 가옥의 담장 및 진입로 등에서 부등침하에 따른 균열 등이 관찰됨에 따라 인접부지를 사업대상지로 포함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 해소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0. 07. 30. ~ 2020. 08. 13.(14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0. 07. 30. ~ 2020. 08. 13.(14일간)
4. 공고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민의 의견청취)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변경)내용				지정(변경)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km ²)			
				당초	변경		
청학 지구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42-5번지 일원	붕괴 위험 지역	D	0.002	0.003	○ 자활1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대상지 인접부지에 위치한 가옥의 담장 및 진입로 등에서 부등침하에 따른 균열 등이 관찰됨에 따라 인접부지를 사업대상지로 포함하여 급경 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 해소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변경)	

7.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청학지구	2020년 ~ 2021년	2,952	- 토 공 : 흙깎기 V=5,867m³, 사토 V=5,151m³ - 배수공 : L형옹벽측구 및 배수로 설치 등 L=224m - 구조물공 : 자중식옹벽 L=115m(H=1.5~4.5m) -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 A=1,481m² - 부대공 : 안전난간 등 1식	

※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 및 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함

8. 의견제출

가.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속초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0년 08월 13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639-2588)

라. 제 출 처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우편번호) 24826

마. 문 의 처 :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033-639-2403)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
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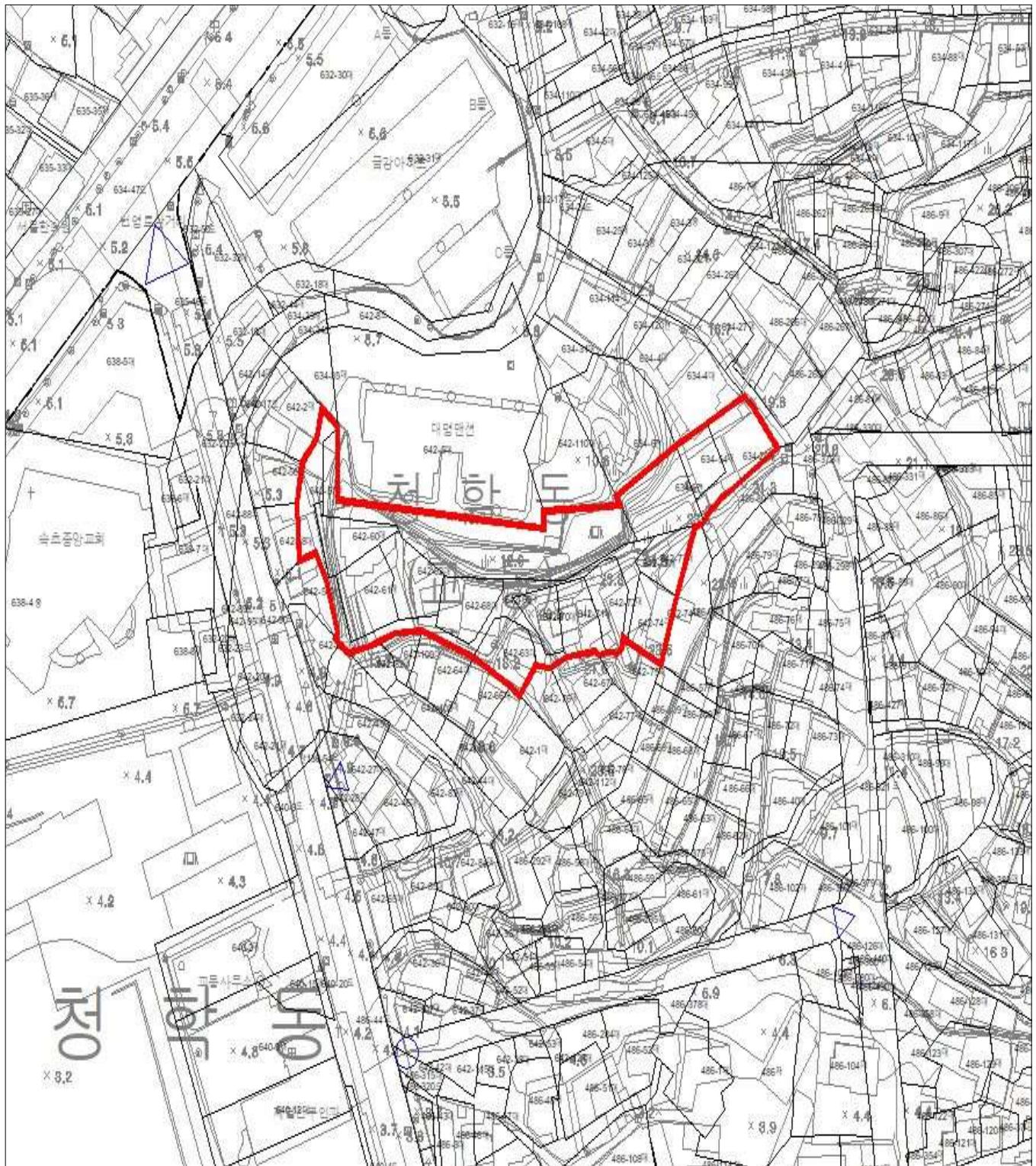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
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속
초시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1부.
2. 편입토지조서(변경)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메임2>

편입토지조서(변경)

[illegible]

<메임3>

주 민 의 건 제 출 서

공 고 명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의견청취 공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 / 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 구 명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